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
운 영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11. 28. 김태수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. 12. 2.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【2014년 12월 17일 상정· 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태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‘교섭단체’의 안정적 법적 기반과 주요 기능,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(안 제3조).
-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(이하 “기본조례”)에 규정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자치법규로 새롭게 제정하는 한편, 교섭단체의 예산 지원 및 인력 운용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임.

2 교섭단체 구성 및 기능(안 제3조, 제4조)

- 교섭단체는 의회내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조율하고, 사전에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, 현재 의회 내 교섭단체는 총 2개로 구체적인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현황>

(단위 : 명)

구 분	지역구	비례대표	계	비 고
새정치민주연합	71	5	76	
새누리당	24	5	29	

- 안 제3조는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,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, 각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성요건과 절차를 현행 제도와 같이(기본조례 제29조) 유지하고 있음.
- 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신설해 i)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, ii)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, iii)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, iv)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 등 교섭단체 구성목적에 명료화 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3 교섭단체 지원 예산의 법적근거 마련(안 제5조)

- 교섭단체는 자치법규상 별도의 근거 없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아 왔으며, 최근 2년간 그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<최근 2년간 교섭단체 지원 예산내역>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의정운영 공통경비	교섭단체지원 예산(비율)	배 분 기 준
2013년	775,106	121,840 (15.7)	○ 소속 의원 1인당 1,068천원
2014년	775,106	96,460 (12.3)	○ 소속 의원 1인당 910천원

- 안 제5조는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 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교섭단체 지원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 교섭단체 보좌 인력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
- 관례적으로 교섭단체는 자치법규상 별도의 근거 없이 의회사무처 소속의 보좌 인력을 지원 받아 왔으며, 현재 각 교섭단체별 보좌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별 보좌 인력 현황>

(단위 : 명)

구 분	일반직 (기능직 포함)	임기제 일반직	시간선택제 임기제	계
새정치민주연합	1	1	2	4
새누리당	2	-	1	3

- 안 제6조는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상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교섭단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

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 등)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6조(교섭단체에 두는 직원)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「서울특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할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.